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 등 및
그 고용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01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11. 19.
3. 회부연월일 : 2025.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도로를 불법 통행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에 각각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및 과태료를 부과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자전거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유형의 자전거도로 중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외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는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제외한 모든 자전거도로에 벌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도로를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고용주 등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불법 차량통행을 실효적으로 제한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56조제1호 및 제160조제3항).

<자전거도로 유형>

① 자전거 전용차로	② 자전거 전용도로	③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④ 자전거 우선도로
차도상 차선으로만 구분된 도로	분리대, 연석 등으로 분리된 도로	분리형	비분리형	차도와 구분없는 차량·자전거 공유도 로
		보행자/자전거 통행로 구분 도로	보행자/자전거 통행로 미구분 도로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자전거 등을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가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가 아닌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로 통행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그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차마의 통행) ⑥ 차마(자전거등은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⑥ (현행과 같음)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 ----- ----- -----.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u>및</u>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1. ----- ----- ----- ----- ----- ----- <u>제5항·제6항(자전거도로로 통행한 운전자로 한정한다)</u> ----- -----

현행	개정안
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 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 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 13. (생략) 제160조(과태료) ①·② (생략)	----- ----- ----- ----- ----- ----- ----- ----- ----- ----- ----- ----- ----- ----- ----- ----- ----- ----- ----- 2. ~ 13. (현행과 같음) 제16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은 차마(자전거등 제외)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 우선도로¹⁾를 제외한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되고,²⁾ 자전거도로에는 지시표지판 등이 있음.

자전거도로 사진 및 지시표지판

구 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도로 사진				
지시 표지판 등		 분리 비분리		 (표지판은 없음)

자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535) 검토보고의 참고 자료

- 1)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임.
-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현행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제1호와 제160조(과태료)제3항은 차마(자전거등 제외)가 자전거 우선도로를 제외한 자전거도로를 통행한 경우를 벌칙과 과태료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자전거등 제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지시 위반을 적용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자전거 전용차로로 통행하는 차마(자전거등 제외)에 대해서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의 전용차로 위반을 이유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지시 위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차종별 통행 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통행한 차마(자전거등 외)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

구 분	현행 적용 규정
자전거 전용도로	신호·지시 위반(제5조) ※ 별도의 차종별 통행 금지 표지 설치 필요 ※ 운전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156 1.) 고용주등: 20만원 이하의 과태료(\$160③)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제15조제3항) ※ 운전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156 1.) 고용주등: 20만원 이하의 과태료(\$160③)

자전거도로에 이륜자동차 등 자동차가 운행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고, 차종별 통행 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여부와 상관 없이 자전거도로에 차마(자전거등 제외)의 통행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제13조제6항을 벌칙 및 과태료 대상에 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① ‘자전거 전용차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56조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처벌하고, 고용주등은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②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통행금지 표지를 설치하여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및 제156조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처벌하고, 고용주등은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등 현행법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와 고용주등을 제재하고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적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